■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3. 19.>

## 정기검사 유효기간(제22조 관련)

| 기 종 |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
| 1. 굴착기 | 타이어식 | 1년 |
| 2. 로더 | 타이어식 | 2년 |
| 3. 지게차 | 1톤 이상 | 2년 |
| 4. 덤프트럭 | - | 1년 |
| 5. 기중기 |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 1년 |
| 6. 모터그레이더 | - | 2년 |
| 7. 콘크리트 믹서트럭 | - | 1년 |
| 8.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 1년 |
| 9. 아스팔트살포기 | - | 1년 |
| 10. 천공기 | 트럭적재식 | 2년 |
| 11. 타워크레인 | - | 6개월 |
| 12. 특수건설기계 | | |
| 가. 도로보수트럭 | 타이어식 | 1년 |
| 나. 노면파쇄기 | 타이어식 | 2년 |
| 다. 노면측정장비 | 타이어식 | 2년 |
| 라. 수목이식기 | 타이어식 | 2년 |
|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 타이어식 | 2년 |
| 바. 트럭지게차 | 타이어식 | 1년 |
|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 | 3년 |
| 13. 그 밖의 건설기계 | | 3년 |

비 고

1.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2.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1년(타워크레인은 6개월)으로 한다.
3.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